
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.

제2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5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⑩ 학교의 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그 사유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조제11항(종전의 제5항)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10항까지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| 제2조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위원회는 교직원(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), 학생, 관련 전문가(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)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을 포함할 수 있다. (후단 신설)     | ③ 위원회는 교직원(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), 학생, 관련 전문가(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)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(同門)을 포함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.</u> |

| 현 행   | 개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④ 삭제  |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삭제  |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5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
| <신 설> |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⑩ 학교의 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해당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그 사유를 즉시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/p> |